##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08

발의연월일: 2020. 7. 27.

발 의 자:조승래·박찬대·이상헌

김민기 · 최종윤 · 김원이

송기헌 · 장철민 · 조응천

서동용 • 윤호중 • 서영교

김병기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"연구기관"이라 함)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함)의 설립 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과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·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음.

하지만 현행법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국유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, 공유재산의 경우에 대 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 물 축조를 허가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유·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

있는 등 국유·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 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7조).

#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)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·공유재산 및물품을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」, 「물품관리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무상으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 및 제46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·수익·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국유·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·수익·대부 및 양여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제7조(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) 제7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·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 ·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과 「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· 양여하거나 사용 · 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수익 · 대부 및 양여 등의 특 례)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 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 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·공유재산 및 물 품을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물품관 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 약에 따라 무상으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게 사용・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유·공유재 산을 사용・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 및 제4 6조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

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 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・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18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・수익・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